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CODEX newsletter

No.16

2021년 11월

## MAIN ISSUE

식약처가 전하는  
CODEX NEWSLETTER 주요내용



### ISSUE 01

CODEX 회의 소식

### ISSUE 02

주요 외국 식품기준 개정  
및 변경 사항



### ISSUE 03

CODEX 온라인작업반 현황/  
의견 개선 요청 공지

# CODEX ALIMENTARIUS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89개 회원과 239개의 국제기구가 가입되어 있는 정부간 기구로 식품안전 및 교역관련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마련합니다.

특히 마련된 국제기준은 국가간 식품교역에서 **유일한 기준**으로 무역 분쟁이 있을 경우 또는 각 국가의 식품기준 설정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FTA의 확대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10회 이상 CODEX 회의에 참여하여 국제식품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식품을 세계로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출처: <http://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



ISSUE 01

## CODEX 회의 소식

### 식약처, 주요 수출국 대상 식품안전규제 설명회 개최

식약처는 2021년 12월 1일~7일간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충북 등 5개 권역에서 미국, 중국, 호주, 베트남 등 국내 기업 수출 실적이 많은 주요 4개국에 식품을 수출하는 국내 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설명회는 주요국의 식품유형별 수입 요건, 기준·규격 및 부적합 사례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수출업체가 식품 수입국의 개정된 기준·규격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국내 수출업체의 현지실사 모범 사례와 준비사항, 주요국의 식품안전기준(표시·유해물질·미생물 기준 등) 규정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해 소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에 대한 세부 내용과 미국으로 식품 수출 시 주요 부적합 원인이 되는 표시제도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안내될 예정입니다.

식약처 홈페이지의 사전등록을 통해 설명회에 참석할 수 있으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지역	일시	장소
1	부산, 울산, 경남	12.1(수) 13:00~17:00	부산지방청 대강당
2	대구, 경북	12.2(목) 13:00~17:00	대구지방청 대강당
3	광주, 전북, 전남, 제주	12.3(금) 13:00~17:00	5.18 기념문화센터 대강당
4	대전, 세종, 충북, 충남	12.6(월) 13:00~17:0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대강당
5	서울, 인천, 경기, 강원	12.7(화) 13:00~17:00	서울지방청 대강당



**식약처,  
제6차 아시아-태평양  
식품안전 심포지움  
세션 개최**

2021년 11월 10일~12일간 국제식품안전성학회 주관 및 식품위생안전성학회 주최의 국제 심포지움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코로나 시대에 식품안전 이슈 대응을 위한 식품안전 역량 강화 및 혁신을 주제로, 국내외 식품과학 분야 정부기관과 산·학·연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식약처는 아시아 식품안전 기준의 현황 및 전망과 CODEX 내 한국의 주요 역할에 대한 세션을 개최하였습니다. 아시아 식품 안전 기준의 현황 및 전망 세션에서는 호주와 인도네시아, 각국의 전반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 소개와 식품안전분야의 국제 이슈 및 원아시아 프로젝트 내용에 대해 논의되었습니다.

CODEX 내 한국의 주요 역할 세션에서는 국제무역에서 CODEX의 역할 및 중요성과 국내 기준의 국제화 현황 및 계획 등에 대해 진행되었으며, 임시위원회로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올해에 임기를 종료하게 된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TFAMR)의 추진경과가 소개되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 학술대회를 우리나라 식품안전 기준의 국제화 및 아시아 국가 간 식품 기준 통합의 의의를 알리고, 국내외 식품안전 전문가와 소통 및 협업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다양한 산·학·연 관계자와의 협업을 통해 국내 현실을 반영한 국제기준 설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입니다.



## 제44차 CODEX 총회 회의 개최

2021년 11월, 제44차 총회(CAC44)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12개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 본회의: 11월 8일~11월 13일, 15일/ 최종보고서 채택: 11월 17일~18일

이번 회의에서는 CODEX 의장단 선거가 진행되어 새로운 의장 및 부의장이 선출되었고, 35건의 CODEX 문서가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 기존 의장(브라질)과 부의장(영국, 인도네시아, 레바논)의 임기가 완료됨에 따라, 제44차 CODEX 총회에서는 의장 1명 및 부의장 3명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가 제네바에서 대면으로 비밀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투표 결과, 영국의 Steve Weame가 의장으로, 케냐의 Allan Embodoka Azegele, 뉴질랜드의 Raj Rajasekar, 칠레의 Diego Varela가 부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오염물질분과, 수출입검사 및 증명시스템분과, 동물용의약품잔류분과 등 지난 1년간 개최된 9개 CODEX 분과위원회에서 최종단계(8 및 5/8단계) 채택을 위한 문서 23건, 5단계 문서 5건, 신규작업 승인을 위한 문서 7건을 총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논의 결과, 초콜릿 내 카드뮴 기준, 연어 내 디프루벤주론 및 돼지 내 할퀴놀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산삼·인삼농축액 내 사이퍼메트린 농약 잔류허용기준 등 오염물질 및 농약·동물용의약품 기준이 새롭게 설정되었습니다. 또한, ‘식품 내 납 오염 저감화 및 예방 실행규범’, ‘일반 공식증명서 설계, 생산, 발행 및 이용을 위한 지침’ 등의 문서가 채택되어 CODEX 공식 문서로 발간될 예정입니다.

내용	논의 결과
초콜릿 내 카드뮴 기준	- 코코아 고형분 30% 미만 함유 초콜릿 내 카드뮴 최대 허용기준 0.3 mg/kg - 코코아 고형분 30% 이상, 50% 미만 함유 초콜릿 내 카드뮴 최대 허용기준 0.7 mg/kg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 연어의 근육·피부 내 디프루벤주론 최대 허용기준 10 µg/kg - 돼지의 부위별 할퀴놀 최대 허용기준 (근육) 40 µg/kg (피부 및 지방) 350 µg/kg (간) 500 µg/kg (신장) 900 µg/kg
식품 내 농약 잔류허용기준	- 수삼 내 사이퍼메트린 최대 허용기준 0.03 mg/kg - 건삼(홍삼) 내 사이퍼메트린 최대 허용기준 0.15 mg/kg - 인삼농축액 내 사이퍼메트린 최대 허용기준 0.06 mg/kg

- 특히,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 활동하는 CODEX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에서 상정된 ‘항생제 내성 최소화 및 확산방지 실행규범’ 및 ‘항생제 내성 통합감시 가이드라인’ 두 개의 문서가 각각 8단계 및 5/8단계로 합의를 이뤄, 총회에서 최종 채택되었습니다. 이로써 CODEX 항생제 내성특별위원회의 임무를 모두 완수함에 따라 올해에 임기가 종료되었습니다.
- 이외에도, 2012년부터 합의되지 못한 소의 신장, 간, 근육 내 질파테롤 동물용의약품 기준 설정 여부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되어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유럽과 기준 설정을 찬성하는 미국, 일본 등 간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소에 대한 질파테롤 기준을 설정하고 있기에, 국제적으로 합의된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하였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차기 총회에서 재논의를 위해 회원국들에게 의견요청 및 과학적 근거자료를 추가적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문서를 회람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차기 제45차 CODEX 총회의 회의 방식 및 회의 날짜는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표단은 국제 기준과 국내 기준이 조화를 이루고, 소비자와 업체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제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제44차 CODEX 총회 회의 의제 원문(영문) 및 결과는 CODEX 홈페이지(<https://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meetings/detail/tr/?meeting=CAC&session=44>)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의 제	
1	의제 채택	CX/CAC 21/44/1
2	제80차, 81차 집행이사회 결과 보고	REP21/EXEC1 REP21/EXEC2
3	CODEX 규정집 개정	CX/CAC 21/44/2 CX/CAC 21/44/2 Add. 1
4	CODEX 분과 및 특별위원회 작업 - 문서 최종채택, 신규작업 승인, 문서 폐지, 작업중단, 편집적 수정 및 개정	
4.1	향신료 및 요리용 허브분과 (CCSCH)	CX/CAC 21/44/3 CX/CAC 21/44/3 Add. 1
4.2	오염물질분과 (CCCF)	CX/CAC 21/44/4 CX/CAC 21/44/4 Add. 1
4.3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분과 (CCMAS)	CX/CAC 21/44/5 CX/CAC 21/44/5 Add. 1
4.4	수출입검사 및 증명시스템분과 (CCFICS)	CX/CAC 21/44/6 CX/CAC 21/44/6 Add. 1
4.5	동물용의약품잔류분과 (CCRVDF)	CX/CAC 21/44/7 CX/CAC 21/44/7 Add. 1
4.6	농약잔류분과 (CCPR)	CX/CAC 21/44/8 CX/CAC 21/44/8 Add. 1
4.7	식품첨가물분과 (CCFA)	CX/CAC 21/44/9 CX/CAC 21/44/9 Add. 1
4.8	식품표시분과 (CCFL)	CX/CAC 21/44/10 CX/CAC 21/44/10 Add. 1
4.9	항생제내성특별위원회 (TFAMR)	CX/CAC 21/44/11 CX/CAC 21/44/11 Add. 1
5	CODEX 규격 및 관련 문서 개정	CX/CAC 21/44/12
6	CODEX 분과위원회에서 제기된 사항	CX/CAC 21/44/13
7	CODEX 예산 및 회계 관련 사항	CX/CAC 21/44/14
8	FAO 및 WHO에서 제기된 사항	CX/CAC 21/44/15
8.1	새로운 식품자원 및 생산 시스템: CODEX의 관심과 지침이 필요 한가?	CX/CAC 21/44/15 Add.1
8.2	새로운 FAO 식품안전전략 2022-2031 - 업데이트 현황	CX/CAC 21/44/15 Add.2
8.3	WHO 식품안전 국제전략 2022-2030- 업데이트 현황	CX/CAC 21/44/15 Add.3
8.4	CODEX 신탁기금: 코로나19 팬더믹으로부터 얻은 교훈	CX/CAC 21/44/15 Add.4
9	CODEX 의장 및 부의장, 집행이사회 지역대표 선거	CX/CAC 21/44/16
10	CODEX 분과위원회 의장 임명 책임 국가 지정	CX/CAC 21/44/17
11	기타 사항	
12	보고서 채택	

## 제27차 CODEX 유지류분과 위원회, 총 7개 의제 논의

2021년 10월, 제27차 CODEX 유지류분과위원회 회의가 화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7개 의제가 논의되었습니다.

\* 본회의: 10월 18일~22일 / 최종보고서 채택: 10월 26일

이번 회의에서는 해바라기씨유의 물리·화학적 지표 개정 및 올리브유 필수 조성 지표 개정 등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해바라기씨유의 지방산 조성 범위 개정(올레산(C18:1): 14.0-43.0%, 리놀레산(C18:2): 45.4-74.0%)에 따라, 굴절률, 상대밀도, 비누화가 및 요오드가에 대한 적절한 수치 설정을 통해 물리·화학적 지표를 개정하여 식물성 유지류 규격 내 해바라기씨유 추가 작업은 5/8단계 채택을 위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식물성 유지류 규격 내 아보카도유 추가 작업은 아보카도유의 정의, 지방산 조성 범위 및 진위 확인을 위한 스테롤 수치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하였습니다. 아보카도유의 정의에 대해서는 순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채취부위와 관련하여 열띤 논의가 있었습니다. 많은 논의 끝에, 아보카도 열매의 종과피와 아보카도 열매 전체 모두에서 얻어질 수 있다고 정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 식물성 유지류 규격 내 카멜리아씨유, 사차인치유 및 고올레산 대두유 추가와 어유 규격 내 카라누스유 추가와 관련하여 신규작업으로 제안된 의제는 신규작업 승인을 위해 총회에 상정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제28차 유지류분과위원회의 회의는 24개월 이후에 개최될 예정이며, 장소 및 일정은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대표단은 논의동향과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고 적절히 대응하여 기준 및 규격이 적절하게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대응할 계획입니다.

▶ 제27차 CODEX 유지류분과위원회 회의 의제 원문(영문) 및 결과는 CODEX 홈페이지(<https://www.fao.org/fao-who-codexalimentarius/meetings/detail/tr/?meeting=CCFO&session=27>)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번호	의 제	관련 문서
1	의제 채택	CX/FO 21/27/1
2	CODEX 총회 및 타분과에서 회부된 사항	CX/FO 21/27/2
3	FAO/WHO 및 90차, 91차 JECFA 회의에서 이관한 사항	CX/FO 21/27/3
4	식물성 유지류 규격(CXS 210-1999) 개정 초안	
4.1	해바라기씨유의 조성 개정: 지방산의 GLC 범위- 올레산과 리놀레산 범위	REP19/FO Para 76(b), (e)
4.2	해바라기씨유의 조성 개정: 물리적 및 화학적 지표 (굴절률, 비누화가, 요오드가 및 상대밀도)	CX/FO 21/27/4
4.3	식물성 유지류 규격 내 아보카도유 추가	CX/FO 21/27/5
5	올리브유 및 올리브퍼미스유 규격초안 개정: Section 3, 8 및 부록	CX/FO 21/27/6
6	별크상 식용유지류의 저장 및 운송 실행규범 내 식용유지 운반탱크에 운송가능한 물질 목록 검토: Appendix 2	CX/FO 21/27/7
7	기존 CODEX 규격 수정 및 신규 작업 제안	CX/FO 21/27/8
7.1	식물성 유지류 규격에 대한 카멜리아씨유 추가	CX/FO 21/27/8 Add. 1
7.2	식물성 유지류 규격에 대한 마후아씨유 추가	CX/FO 21/27/8 Add. 1
7.3	식물성 유지류 규격에 대한 사차인치유 추가	CX/FO 21/27/8 Add. 1
7.4	지방스프레드 및 혼합 스프레드 규격 수정/개정: Section 2, 3	CX/FO 21/27/8 Add. 1
7.5	어유 규격에 대한 카라누스유 추가	CX/FO 21/27/8 Add. 1
7.6	식물성 유지류 규격에 대한 고올레산대두유 추가	CX/FO 21/27/8 Add. 1
8	기타 사업	
9	차기 회의 일정 및 장소	
11	보고서 채택	



ISSUE 02

## 주요 외국 식품기준 개정 및 변경 사항

### 중국

#### 중국 해관총서,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규정」에 관한 해석 발표 (11월 5일)

'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적용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과 관련하여 중국 해관총서에서 본 규정에 관한 해석을 발표하였고, 개정사항의 주요 내용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7조 - 소재 국가 주관 당국에서 등록을 추천하는 품목

###### ※ 해석

- 18종\*의 식품 생산기업은 해당 소재 국가 주관 당국에서 해관총서 등록을 추천하도록 함. 해관총서 공식 홈페이지에서 해당하는 18종 및 기타 수입식품의 HS 코드 범위를 확인할 수 있음
- \* 육류 및 육류제품, 케이싱, 수산물, 유제품,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벌꿀제품, 계란 및 계란제품, 식용유지와 그 원료, 소를 넣은 면류, 식용 곡물, 제분 곡물 제품 및 맥아, 신선·탈수 채소 및 말린 콩, 조미료, 견과와 씨앗류, 견과, 로스팅하지 않은 커피콩과 코코아, 특수 식이용 식품, 건강식품

##### (2) 제9조 - 업체 또는 대리인이 등록 신청하는 방법

###### ※ 해석

- 제7조에 명시한 18종 외의 식품 생산기업은 자체로 또는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해관총서에 등록 신청할 수 있음. 이때, 소재 국가 주관 당국의 등록 추천이 필요하지 않아 신청 절차가 간소함
- 당사자가 대리인에게 위탁하여 해관에 등록 신청할 시, 본 조항에 규정한 신청 자료 외에, 위임장\*을 제공해야 함
- \* 위임장에는 위임인 및 해당 대리인의 기본 정보, 위임 사항 및 대리 권한, 대리 권한의 시작일과 종료일, 위임일자 및 위임인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3) 제13조 - 평가 및 심사 방식

###### ※ 해석

- 해관총서에서 자체로 혹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최소 2명 이상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 및 심사하며, 구체적인 시행 방법은 본 규정과 별도로 해관총서가 명확히 하도록 함
- 해관총서는 위험 분석 및 실제 업무에 따라 해외 기업에 대하여 서로 다른 형식 또는 2개 이상의 조합으로 평가 및 심사를 진행할 수 있음

검사방식	내용
서면 검사	- 제출한 신청 문서에 대해 검사를 진행하고, 신청 국가 주관 당국 또는 신청자에게 부족한 정보 또는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영상 검사	- 인터넷 연결로 기업의 식품안전위생관리시스템 및 식품안전위생 상황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함 - 영상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관련 문제에 대하여, 영상 검사를 받는 기업 및 소재 국가 주관 당국에 시정 및 시정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현장 검사	- 평가단이 해외생산기업 현장으로 출국하여 기업의 식품안전위생관리시스템 및 식품안전위생 상황 등에 대한 검사를 진행함 - 해관총서는 현장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에 대하여 현장검사를 받는 기업 및 소재 국가 주관 당국에 시정 및 시정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4) 제14조 - 등록번호 부여**

※ 해석

- 해외 수입식품의 생산기업 등록번호는 기업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등록번호를 따르도록 함
- 단, 각 국가의 식품안전관리시스템과 번호 규칙이 서로 달라 등록번호 중복, 혼동 등의 상황이 자주 발생하므로, 이번 개정에서 중국에서 새로 설정한 등록번호 요구사항이 추가되어 이미 등록을 마친 기업에 중국에서 일관된 등록번호를 부여함

**(5) 제15조 - 등록번호 표기 방식**

※ 해석

- 이미 등록을 마친 기업은 중국 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 주관 당국이 승인한 등록번호 중 임의로 선택하여 표기할 수 있음.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중국 등록번호의 표기를 선택할 것을 권장함
- 본 조항에서 외포장 및 내포장은 운송 포장과 개별 포장이 해당되며 별도로 판매가 가능한 포장을 말함
  - ① 운송 포장에 대해 등록번호는 반드시 운송 포장에 선명하고 정확하게 표시해야 함
  - ② 개별 포장을 포함하여 별도로 판매가 가능한 포장에 대해 식품 라벨에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하고, 이때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GB 7718-2011)에 따른 관련 요구사항을 따라야 함

\*출처  
① <http://jckspj.customs.gov.cn/spj/zcfg18/bmgz91/3985778/index.html>

**중국, 사전 포장 식품에 대한 병원균 제한 관련 규정 시행일 발표(11월 22일)**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와 국가시장감독총국에서 2021년 9월 17일에 공동발표한 《사전포장식품중 병원균 제한량(GB 29921-2021)》 규정이 11월 22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동 규정에는 식품 중 병원균 지표, 제한량 및 검사방법이 명시되어 있으며, 2013년에 발표한 《식품 중 병원균 제한량(GB 29921-2013)》 규정을 개정한 것입니다.

총 4가지 방면에 대해 개정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GB 29921-2013)	개정 후(GB 29921-2021)
1. 표준 명칭 및 적용범위 변경	- 표준명칭: 식품 중 병원균 제한량 - 적용범위: 통조림 제품 제외 사전포장식품	- 표준명칭: 사전포장식품 중 병원균 제한량 - 적용범위: 상업적으로 무균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 포장 생수 및 음용천연광천수 제외 사전포장식품
2. 유제품 및 특수식이용도 식품 관련 규정 통합	11개의 식품유형 (육제품, 수산품, 즉석섭취 알제품, 곡류제품, 두류제품, 초콜릿류 및 코코아제품, 가공과채류, 음료, 빙과류, 조미료, 견과·씨앗류 제품)	11개 식품유형에 2개 추가(유제품, 특수식이용도 식품) [신설] - 유제품: <i>S. enterica</i> , <i>S. aureus</i> , <i>L. monocytogenes</i> - 특수용도식품: <i>Salmonella</i> , <i>S. aureus</i> , <i>Enterobacter sakazakii</i>
3. 일부 식품의 제한 병원균 종류 변경	- 육제품: <i>S. enterica</i> , <i>L. monocytogenes</i> , <i>S. aureus</i> , <i>E. coli</i> O157:H7 - 수산품: <i>S. enterica</i> , <i>Vibrio</i> 군, <i>S. aureus</i> - 가공과채류: <i>S. enterica</i> , <i>S. aureus</i> , <i>E. coli</i> O157:H7 - 빙과류: <i>S. enterica</i> , <i>S. aureus</i>	- 육제품: <i>E. coli</i> 신설 - 수산품: <i>L. monocytogenes</i> 신설, <i>S. aureus</i> 삭제 - 가공과채류: <i>L. monocytogenes</i> , <i>E. coli</i> 신설 - 빙과류: <i>L. monocytogenes</i> 신설
4. 식품유형별 종류(부록A)에 대한 자료 추가	-	규정에 해당되는 식품유형별 종류에 대한 설명 부록 추가를 통해 적용 식품을 정확히 제시

\*출처  
① <http://news.foodmate.net/2021/11/612730.html>

② <http://news.foodmate.net/2021/09/606743.html>

동 규정에 해당되는 식품을 중국으로 수출하는 업체는 변경 사항을 정확히 숙지하여 수출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만

**대만 위생복지부,  
「사전포장식품의 영양성분 강조표시 준수사항」규정 수정초안 공고(10월 13일)**

대만 위생복지부는 「사전포장식품 영양성분 강조표시 준수사항」 규정의 적용범위, 용어 정의, 영양소 표시 방식 등을 구체화한 수정 초안을 공고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적용범위 확대**

**- 기존 적용 범위에 특수영양식품\* 추가**

\* 특수영양식품: 영아(0~3세) 및 유아(4~6세)의 조제식품, 특정 질병에 대한 처방 식품 및 기타 정부 기관에서 허가한 특수 영양 수요자의 처방 식품

**2. 용어 정의 구체화**

**- ‘영양표시’, ‘적당량 섭취 필요 영양소’,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 정의 구체화**

- ▶ 영양표시: 설명, 암시 등의 방식으로 해당 제품이 함유하거나 함유하지 않은 특정 열량/영양소에 대한 표시
- ▶ 적당량 섭취 필요 영양소: 과다 섭취 시,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량, 지방, 포화지방산,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당, 유당 등
- ▶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 섭취 부족 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별도의 공급, 보충이 필요한 식이섭유, 비타민A, 비타민B1, 비타민B2, 비타민C, 비타민E, 칼슘, 철분 등

**3. Rehydratable food\* 섭취 전 희석이 필요한 식품 표시 기준 변경**

\* Rehydratable food: 수분을 제거하여 가공한 식품으로, 물 첨가 시 원래의 상태로 섭취가능함 (기준) 100g의 고체 또는 제품 표시 권장량에 따라 조제한 100ml 액체의 영양소 함량을 기준으로 ‘적당량 섭취 필요’와 ‘보충섭취 가능’을 통해 영양 권장 기준(동 규정 별표1) 구분 (수정) ‘영양표시 방식은 적당량 섭취 필요 영양소와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의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함’ 문구 추가됨

- ▶ 적당량 섭취 필요 영양소 함량 표시: 식품에 함유된 열량 및 영양소를 식품 단위 중량, 용량 또는 수량으로 표시
- ▶ 보충섭취 가능 영양소 함량 표시: 높음/많음/강화/다량함유 또는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도 표시가능

**4. 액체 식품의 표시사항 추가**

(기존) 식품(고체/액체)에 두 가지 이상 영양성분을 표시할 경우, 영양성분 함량 표시는 같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

(수정) 액체 식품의 경우 100ml 또는 100kcal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함

\*출처

① <https://www.foodlabel.org.tw/FdaFrontEndApp/Law/Edit?SystemId=a825a92f-91c1-4f27-9dbc-ca414a0478b4&clPublishStatus=2>

본 규정의 초안에 대해 2021년 12월까지 6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해당 식품을 대만으로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동 규정의 내용을 잘 숙지해야 합니다.

인도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 「식품 안전 및 기준(유전자 변형·조작 식품) 규정 2021」 초안 발표(11월 15일)**

인도 식품안전기준청(FSSAI)은 유전자 변형 및 조작 식품의 정의와 표시 방법 및 제조·보관·유통·판매를 위한 사전 승인 관련 내용 등을 규정하는 「식품 안전 및 기준(유전자 변형 또는 유전자 식품) 규정, 2021」의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1. 적용 식품 범위**

- 식품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 또는 유전자 조작 생물체(GEO) 또는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 GMO, LMO 또는 GEO에 포함되지 않지만 유전자가 조작된 물질로부터 생산된 식품 (단, GMO, LEO 또는 GEO는 영유아 식품의 성분으로 사용불가)
- \* 유전자 변형 생물체(GMO)/유전자 조작 생물체(GEO) 함유 식품: 생명공학 기술을 통해 유전자를 변형 및 조작한 생물체를 이용하여 원하는 특성을 갖도록 한 식품
- 유전자 변형 생물체(LMO) 함유 식품: GMO의 일종으로, 인위적으로 변형된 유전자가 포함된 살아있는 생물체를 함유한 식품

**2. 표시 방법**

- 유전자 조작 성분이 1% 이상인 모든 식품은 “GMO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는 ”GMO로부터 만들어진 식품입니다” 문구 필수 표시

**3. 사전 승인 절차**

- 해당 식품을 제조·보관·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서류들을 FSSAI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 필요 준비서류
- ① 인도 유전공학평가위원회(GEAC) 승인 문서
- ② 수출국에서 발급한 승인서류
- ③ 원산지 국가의 유전자 조작 및 변형 식품에 대한 3년간 이력 관련 정보
- ④ 해당 유전자 조작 및 변형 식품의 수출 이력 관련 정보(무역량 및 해당 국가 등)

\*출처

① [https://fssai.gov.in/upload/uploadfiles/files/Draft\\_Notification\\_GM\\_Food\\_17\\_11\\_2021.pdf](https://fssai.gov.in/upload/uploadfiles/files/Draft_Notification_GM_Food_17_11_2021.pdf)

발표일로부터 60일 동안 해당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며, FSSAI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날부터 바로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해당 식품을 인도로 수출하고 있거나 수출 계획이 있는 경우, 동 규정을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ISSUE 03

## CODEX 온라인작업반 현황 / 의견 개진 요청 공지

### 분석방법 및 시료채취 분과(CCMAS)

1	제 목	<전자작업반> 시료에 대한 권장 분석 및 채취 방법(CXS 234-1999) 내 유지류에 대한 분석방법의 적합성 및 올리브유 및 올리브퍼미스유 규격(CXS 33-1981) 내 시료 분석 방법의 사용 적합성에 대한 의견 요청
	주요 내용	1. 시료에 대한 권장 분석 및 채취방법(CXS 234-1999) 내 유지류 분석 방법 및 분석법 타입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 요청 2. 올리브유 및 올리브퍼미스유 규격(CXS 33-1981) 내 시료 분석 및 채취 방법의 적합성에 대한 의견 요청
	의견요청기한	~2021.12.17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CODEX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은 [codexkorea@korea.kr](mailto:codexkorea@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의 CODEX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